

보도 일시	2023. 3. 9.(목) 12:00 2023. 3. 10.(금) 조간	배포 일시	2023. 3. 9.(목)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범석 (044-202-7454)
		담당자	사무관 김양언 (044-202-7460) 주무관 정진성 (044-202-7461)

기업의 고령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 '23년 1,000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1,054개소 확정
- 300인 이상 기업 재취업지원 무료 컨설팅 제공, 서비스 비용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54개소*를 대상으로 정년퇴직,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 958개소('20년) → 1,031개소('21년) → 1,043개소('22년) → 1,054개소('23년)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0. 5. 1.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나아가 올해부터는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신설하였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한 무료 컨설팅 사업의 대상을 기존 1,000인 이상 의무 기업에서 300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까지 확대(400개사, 34억원)하고,

컨설팅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사업 참여 이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제도를 반영하고 이직예정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인원 1인당 50만원 범위 내의 비용을 기업에 지원(1000명, 5억원)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3개월 단위로(1차 3.6.~3.31., 2차 6.5.~6.30., 3차 9.4.~9.29.)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go.kr)을 통해 공고하며, 제도 도입 전 사업주 또는 컨설팅 위탁기관이 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재정 여력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신청을 받아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12개소)를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 인력정책과로 ‘재취업 관련 공공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 결정 통지된다.

*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및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go.kr)에 게시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업에서 올해 3월 말까지 제출한 2022년도 재취업 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서비스 실시율이 낮은 사업장 등 제도 운영이 미흡하거나 다수 근로자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1,000인 이상 기업의 이행률을 높이고 노사의 인식을 제고하며,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이들이 노동시장에 원하는 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50대 이상 준·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 ‘20.5.1. 1000명 이상 대기업의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 「고령자고용법」제21조의3(‘19.4.30. 개정, ‘20.5.1. 시행)

□ 주요 내용

❶ 의무 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1,000명 이상 사업

❷ 의무 제공 근로자: 1년 이상(계약직은 3년 이상) 근속한 50세 이상의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

* 근로자의 참여 거부: 질병, 재취업 확정으로 서비스 참여가 불필요 하는 등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참여 거부 의사 확인 시 제외

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진로·생애경력설계(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❹ 제공 시기: 해당 근로자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 제공

* 경영상 해고, 희망퇴직 등의 경우 이직전 1년, 이직후 6개월 이내 제공

❺ 제공 방식: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공, 근로자가 전문기관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참여 가능

*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무료 직업소개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위탁기관

❻ 운영체계: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운영 결과 제출